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윤준병·허성무·문대림  
송옥주·최혁진·김 현  
박홍배·안호영·박민규  
양부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·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,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또한 이렇게 확충된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·선정된 주민복지 향상 사업에 법인·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재원의 활용처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,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·선정된 주민복지 향상 사업에 법인·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,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 각 목 신설,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등).

##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”를 “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·단체(이하 “기부대상자”라 한다)로부터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다른 사람에게”를 “기부대상자에게”로 한다.

가.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

나.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

제4조제1항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”를 “기부대상자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타인의”를 “타인 또는 다른 법인·단체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다른 사람에게”를 “타인 또는 다른 법인·단체에게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 또는 법인·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인별”을 “기부자별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공모 또는 선정된 주민복지 향상 사업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·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에 한정한다)

제13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 부분) 중 “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
2. 고향사랑기금의 지출 및 사용 내역
3.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
4.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별 평가 결과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·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에 한정한다)
5.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6.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

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”를 “기부대상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·단체로부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고향사랑 기부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</u>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“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, 정보통신망의 이용,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<u>다른 사람에게</u> 의뢰·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</u> <u>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·단체(이하 “기부대상자”라 한다)로부터</u>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지가 <u>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<u>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기부대상자에게</u>----- -----</p>

말한다.

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)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5조(기부의 제한)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업무·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(이하 “기부자”라 한다)에게 지

-----.

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) ① -----  
-----기부대상자에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부의 제한) ① -----  
타인 또는 다른 법인·단체의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지) ① -----  
-----타인  
또는 다른 법인·단체에게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사람  
또는 법인·단체-----



4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13조(결과 공개의무)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리 향상 사업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·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에 한정한다)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결과 공개의무) ① -----  
-----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-----  
-----.

1.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

2. 고향사랑기금의 지출 및 사업 내역

3.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

4.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별 평가 결과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·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에 한정한다)

5.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

<신 설>

<신 설>

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,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

2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인정하는 사항

6.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기부 대상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· 단체로부터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